

경상북도교육청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



경 상 북 도 교 육 청

경상북도교육청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

폐지조례안

의안 번호	710
----------	-----

제출연월일: 2017. 9. .

제 출 자: 경상북도교육감

1. 폐지 이유

- 가. 본 조례는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재원을 적립하고, 부채규모 감축을 목적으로 2006. 12. 28. 제정되었음
- 나.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에서 “「지방자치법」 제142조에 따른 기금은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로 사업을 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만 설치할 수 있다”는 제3조제3항 조문이 신설되었음(2016. 1. 1.자 시행)
- 다. 「지방회계법」 제19조에 결산상 잉여금이 있을 경우 다음연도 세출예산에 관계없이 지방채 원리금을 상환할 수 있는 규정이 있고, 본 조례 제정 이후 지금까지 운용을 하지 않았으며 향후에도 운용의 필요성이 없음

2. 주요 내용

「경상북도교육청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」를 폐지함

3. 폐지 조례안: 붙임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1) 지방자치법
- 2)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
- 3) 지방회계법
- 4) 지방재정법

나. 예산조치: 해당사항 없음

다. 합 의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 타

1) 입법예고

가. 기간: 2017. 7. 7. ~ 2017. 7. 27.

나. 결과: 의견 없음

- 2) 규제심사: 해당사항 없음
- 3) 부패영향평가: 해당사항 없음
- 4) 성별영향분석평가: 해당사항 없음

경상북도 조례 제 호

경상북도교육청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
폐지조례안

경상북도교육청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【관계 법령】

□ 지방자치법

제142조(재산과 기금의 설치)

-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.
- 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, 기금의 설치·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.
- ③ 제1항에서 "재산"이란 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말한다.

□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

제3조(기금의 설치 제한)

- ③ 「지방자치법」 제142조에 따른 기금은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로 사업을 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만 설치할 수 있다.

□ 지방회계법

제19조(결산상 잉여금의 처리)

지방자치단체는 회계연도마다 세입·세출 결산상 잉여금(잉여금)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잉여금을

그 잉여금이 생긴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까지 세출예산에 관계 없이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에 사용할 수 있다.

1. 다른 법률에 따라 용도가 정하여진 금액
2. 「지방재정법」 제50조에 따른 이월금

□ 지방재정법

제50조(세출예산의 이월)

①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그 회계연도에 그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서 세입·세출예산에 그 취지를 분명하게 밝혀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.

② 세출예산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사고이월비(사고이월비)로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.

1.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하지 아니한 그 부대 경비
2. 지출원인행위를 위하여 입찰공고를 한 경비 중 입찰공고 후 지출원인행위를 할 때까지 오랜 기간이 걸리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
3. 공익·공공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손실보상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

4. 경상적 성격의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

- ③ 계속비의 회계연도별 필요경비 중 해당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그 계속비의 사업완성 연도까지 차례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.
-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예산을 이월할 때에는 그 이월하는 과목별 금액은 이월 예산으로 배정된 것으로 본다.

경상북도교육청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수반요인

- 「경상북도교육청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」 제정 이후 감채기금 설치를 하지 않고 교육비특별회계에서 직접 지방채를 상환해 왔고, 향후에도 감채기금 설치의 필요성이 없어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비용수반 요인이 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경상북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1항제2호

제3조(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) ① 경상북도교육감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경상북도의회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
1.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
2.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② 제1항 각 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
3. 미첨부 사유

- 폐지 조례안으로서 비용을 수반하지 않음

4. 작성자: 재무정보과 행정6급 황금영(054-805-3802)

소관 관·과		재무정보과
입 안 자	담당관·과장 직위·성명	재무정보과장 지방서기관 김창규
	담당 직위·성명	회계담당 지방교육행정사무관 박동필
	담당자 성명·전화	지방교육행정주사 황금영(054-805-3802)